

□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공인인증 로그인

1.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방법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대분류: '검사행위 관련 장비', 대분류목적: '검체검사장비' 선택 후

⑤ 조회 클릭 후 ⑥ 엑셀저장

엑셀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⑦ 장비 정보 확인

- 실제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 신규 등록
 -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 확인 후 정확한 정보 입력
 -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 사용중지·폐기·양도 신고

2. 장비 신규 등록 방법

보건의료지원통합신고포털

로그아웃 (5 : 32)

상태

서비스안내 개설신고·변경 원활신고·변경 휴·폐업 관계기관정보등록 정보마당 등계 마이페이지

일반현황

요양기관 주<->통증개선자 변경신고
사업자번호 청구SW업체 변경신고

사업현황

사업현황 신고
차동제 운동방법 신고
요양기관 일반감염증 예방비상 병상 신고

인력현황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대전의 선별진료소
의(약)국산사 신고
의료기관 신고
간호인력 신고
정신건강질상심리사 신고
동워홀로 취급인력 신고
의료인력 면허증발행자와 연계회

경비현황

경비현황 신고목록
진료비기준 면허신고
한방진료기준 면허신고
특수경비기준 면허신고
특수경비 인력 신고
특수경비 인력 신고목록
면허증 신고
화재도 재활용 신고
바코드 재발급 신청번호 조회
의료비 증정증보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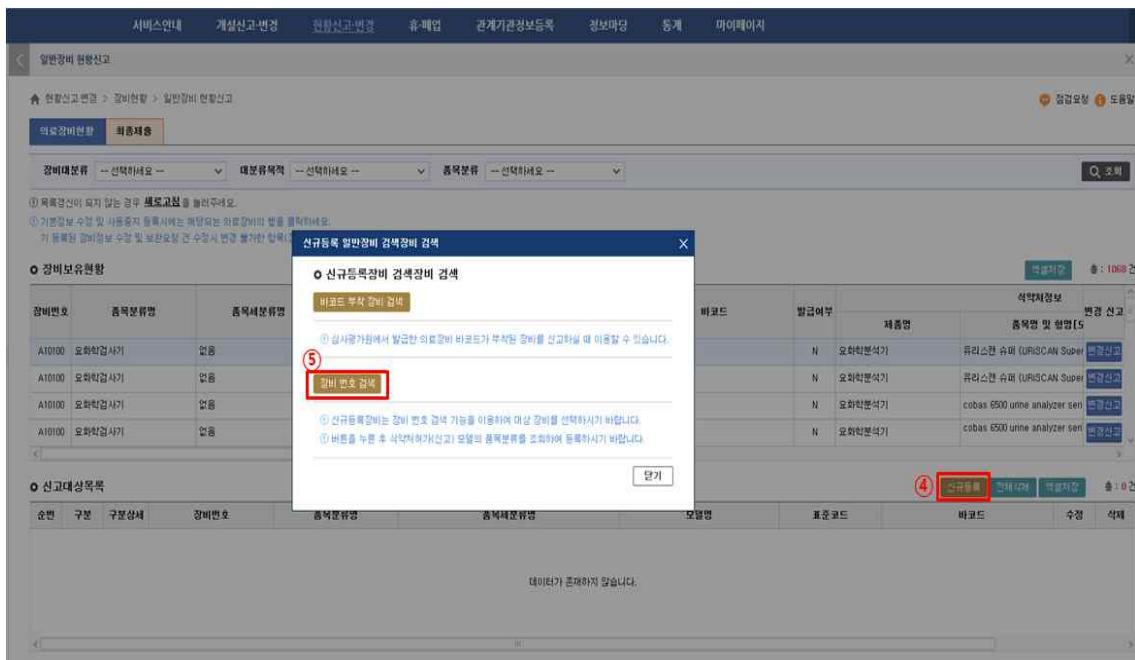
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장현황 조회
전문분야 지정현황 조회
상급침대별 지정현황 조회
3개 의료기관기준 지정현황 조회
장기미식사기준 지정현황 조회
검체사 수취기준 정보조회
자체제 검체사 수취기준 정보조회
진료 인허가기관 정보조회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현황 신고목록
증급료기준 신고
복약처방 및 협약 치과의사별 신고
사설 공동의료기관 신고
장기미식사기준 신고
가장기호흡기증상심사기준 신고
침여부의료기준 신고(개인별명)
소외층증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관 신고
장기미식사기준 신고
의료기관별身心증상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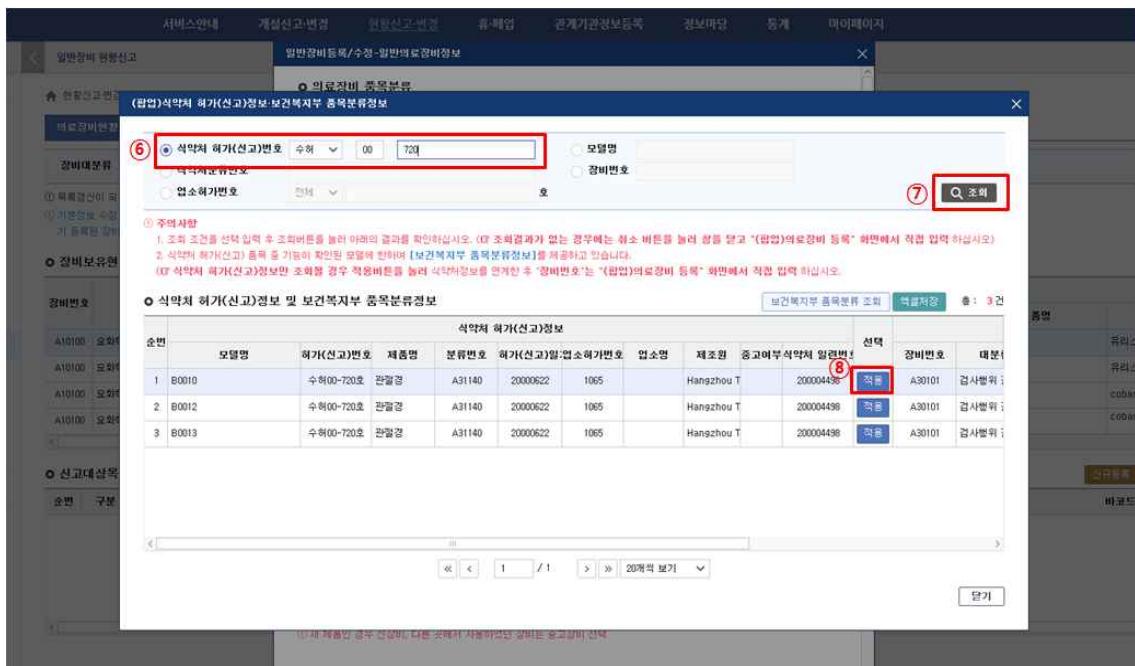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기원조사표 적용
난임기술기록 조회
난임여부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신규등록 클릭 후 ⑤ 장비 번호 검색 클릭



⑥ 식약처 허가(신고)번호 입력 후 ⑦ 조회 한 뒤 모델명 등 확인 후 해당 장비 ⑧ 적용 버튼 클릭

일반장비 등록/수정-일반장비 현황신고

⑨ 의료장비 정보

바코드
① 바코드 무선장비는 바코드를 입력하여 등록 **바코드 등록**

식약처 청탁조회
② 버튼을 눌러 식약처정보 자동 연계등록

모델명 B10010 **제조번호** 수취00-720호

제조년월 **제조번호**

제조사Hangzhou Tonglu Sophisticated Medical-Optics Instrument Factory

구입 세부사항
+ 도입현태 [선택] + 구입일자 -
[선택] 0 원
[선택] 구입금액
③ 구입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0으로 입력

기타
+ 설치장소 [선택] + 관리자 [선택] **장비를 금여력을 알자, 신고기준**

④ 도입현태는 구입, 일자(리스), 기증 중 선택
⑤ 구입금액은 구입일 경주한 입력, 일자(리스), 기증, 구입금액을 알 수 없는 오류란 장비는 '0'으로 입력
⑥ 새 제품인 경우 신장비, 다른 곳에서 사용하였던 장비는 중고장비 선택

⑩ 임시저장

○ 구비서류안내

⑦ 구입 또는 입차 사설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⑨ 의료장비 정보 상세 입력 후 ⑩ 임시저장

일반장비 현황신고

⑪ 의료장비 정보

⑫ 전달사항 등록

파일첨부
파일명
파일업로드가 모두 끝난 후에 전달사항을 작성하세요.

○ 작성자 정보등록

⑬ 최종제출

○ 구비서류안내

⑭ 최종제출

⑪ 최종제출 클릭 후 ⑫ 전달사항 등록한 뒤 ⑬ 최종제출

* 유의사항

- 기존에 신고 된 의료장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규장비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파일첨부' 하거나 'Fax 전송' 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 **구입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or 매매계약서) 사본, **식약처 의료기기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증** 사본(식약처 정보조회 활용시 생략 가능)
- * 구입한지 오래 된 장비라 구입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비 상세 사진, 라벨 사진** 제출

3. 장비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방법

① 현황신고·변경 / ② 장비현황 / ③ 일반장비 현황신고 클릭

④ 장비보유현황에서 해당 장비 우측의 ⑤ 변경신고 버튼 클릭

3-1.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장비 정보 변경 신고

⑥ 의료장비 정보

바코드
① 바코드 부착장비는 바코드를 입력하여 등록

식약처 정보조회
② 버튼을 눌러 식약처정보 자동 연계등록

제조연월
제조년월: 2010-05 | 제조번호: 0

제조사
제조사명: Stryker Endoscopy

구입 세부사항
구입 형태: 구입 | 구입일자: 2010-10-22 | 구입금액: 4,500,000 원
구입 구분: 신장비

기타
설치장소: 기타 | 충여 적용일자: 2010-10-22 | 장비별 급여 적용일자 산출기준

⑦ 임시저장

⑥ 의료장비 정보에서 해당 내역 수정 후 ⑦ 임시저장

⑧ 최종제출

⑨ 전달사항 등록

⑩ 최종제출

⑧ 최종제출 클릭 후 ⑨ 전달사항 등록한 뒤 ⑩ 최종제출

3-2. 미보유 장비 사용중지 · 폐기 · 양도 신고

- ⑥ 의료장비 사용중지 정보에서 ⑦ 사용중지구분 선택, ⑧ 사용중지일자 입력한 뒤 ⑨ 임시저장

- ⑩ 최종제출 클릭 후 ⑪ 전달사항 등록한 뒤 ⑫ 최종제출